

1. 개정 이유

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,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물류·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 변경등록 대상 완화(안 제7조)

- 1)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

나.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 완화(안 제14조의7)

- 1)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인증우수물류기업의 평가수준으로 완화하여 중소 물류·화주기업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 참여 확대 도모

* 인증우수물류기업 : 128개('15년~'20년 현재)

(종합물류서비스 18, 국제물류주선 26, 화물자동차운송 49, 물류창고 31, 화물정보망 4)

*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: 21개('12년~'20년 현재)

다.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근거 마련(안 제14조의8)

- 1)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근거규정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”을 “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(다만, 기 등록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보다 늘어난 경우는 제외)”로 한다.

제14조의7제1항 중 “80점”을 “70점”으로 하고, “5할”을 “2할”로 한다.

제14조의8 중 “법 제60조의7제1항”을 “① 법 제60조의7제3항”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69조제1항제5호”를 “제69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)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7조(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</u>	2.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(<u>다만, 기 등록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보다 늘어난 경우는 제외</u>)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~③ (생략)	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7(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)	제14조의7(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)
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<u>80점</u> 이상이어야 하고, 평가항목별 배점의 <u>5할</u> 이상을 취득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70점</u> ----- ----- <u>2할</u> -----

하여야 한다. ②~⑤ (생략) 제14조의8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·운영) <u>법 제60조의7제1항</u>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·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 < 신설 > 제15조(수수료) ① (생략) ② 법 <u>제69조제1항제5호</u>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 ③·④ (생략)	----- ②~⑤ (현행과 같음) 제14조의8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·운영) ① <u>법 제60조의7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② <u>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제15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<u>제69조제1항제4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	---